부록 3 특례입학대상자(정원 외)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

1. 지원 자격(대상)

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북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의함

구 분			자 격 요 건				
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	제1호		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, 초·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				
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	제2호	가목	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)				
		나목	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				
		다목	외국인 학생 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)				
북한이탈주민	제3호	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 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				
북한이탈주민 등	제4호		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				

2. 제출서류

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

				제2호	다목			
해당자별 구비서류	제1호	제2호 가목	제2호 나목	부모 모두가 외국인 인 학생	기타 외국인 학생	제3호	제4호	비고
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(졸업)증명서	0	0	0	0	0			○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○ 외국학력 인정학교(교육부 누리집 탑재)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○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 명하거나(외국 관할교육청의 학 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) 종전 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 유 확인
유학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		0	0					○ 가까운 초·중·고 ○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
출입국사실 증명서	○ (학생)	○ (부모, 학생)	○ (부모, 학생)	○ (학생)	○ (학생)			O 행정구청, 주민센터, 법무부출 입국 관리사무소, 민원24 홈페 이지
가족관계증명서		()		0	0			O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
전가족주민등록 등본	0	0	0			0	0	○ 행정구청, 주민센터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○ 전 가족 등재. 단독세대 구성, 귀국일자이후 발행 ○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
과학기술자,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			0					O 주무부 장관 발급
제3국 수학인정서		()						O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
국내거주사실 확인서, 영주권사본		()						○ 행정구청, 주민센터, 출입국 관리사무소, 민원24 누리집 ○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
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				(부모, 학생)	○ (학생)			O 행정구청, 주민센터, 출입국 관리사무소, 민원24 홈페이지
북한이탈주민확인 서 및 학력보증서	()					0	()	○ 해당 행정구청 (해당기관장 발행)
학력인정증명서	()						0	O 민주시민교육과 발행
한부모가족증명서		()						○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, 민원24 홈페이지

혼인관계증명서		()						O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, 대법 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 페이지
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	()					0	0	O 해당 기관
예방접종확인서	()	()	()	()	()	()	()	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{(2016. 교육부 '학생 감염예 방 종합대책'(2016. 2.)}
학부모 확인서	0	0	0	0	0	0	0	O 학부모 자필 확인서(서식8)
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외국 거주 기간 및 체류 확인을 위한 서류 (특례입학대상자 본인, 부, 모 제출)	()	0	()	()	(0)			○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-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,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(사증)란 -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임대차계약서 -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-해당국 외국인등록증, 의료보험증, 운전면허증, 체류허가증, 거류증, 영주권 등

- 1. 제3국 수학인정서: 국제 정세,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
- 2.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,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 시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받은 후 제출
- 3. 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 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 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,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
- 4. 구비 서류 발행처 등
- 1) 출입국 사실증명-출입국관리사무소(문의: 외국인종합안센터 ☎1345), 구청·동 주민센터, 민원24사이트
- 2)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-출입국관리사무소, 구청·동 주민센터, 민원24사이트
- 3) 외국인등록사실증명-출입국관리사무소, 구청·동 주민센터, 민원24사이트
- 4) 예방접종확인서-구비서류: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류
 - -발행처: 거주지 관할 보건소
 - -구비서류 발급 방법: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

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

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

-예방접종 대상 감염병: 결핵, 유행성이하선염, 수두, 일본뇌염, B형간염, 폴리오, B

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, A형간염, MMR(홍역, 볼거리,

풍진), Tdap/Td(파상풍, 디프테리아, 백일해)

※ 위 내용은「중·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(교육부 고시 제2015-70호,2015.8.28)」, 전라북도교육청「2021학년도 초·중·고등학교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」에 의거함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사항 확인